

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일괄신고서	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위험관리 전략,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,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수정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2년 7월 1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	[요약정보] 투자비용 총 보수·비용 <생략>	[요약정보] 투자비용 총 보수·비용 <업데이트>
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<생략>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
본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<생략>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	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,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투자전략] (2) 위험관리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.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자산별,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점검하며,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, 관리합니다.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, 기준지수 대비 성과,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. (생략)	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,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투자전략] (2) 위험관리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, 원활한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인 리스크관리심의회에서 투자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·관리합니다.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용부서에 포트폴리오 위험, 기준지수 대비 성과,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자산별,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수시점검합니다. 각 위험별 통제를 위해 필요 시 리스크관리심의회의 구성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. (생략)
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<p>연환산 표준편차 : 20.55%</p> <p>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 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 <p>②비상장주식 :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·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·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③-① 장외파생상품 :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. (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의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준하여 평가)</p> <p>[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]</p> <p><생략></p>	<p>연환산 표준편차 : 20.41%</p> <p>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 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 <p>②비상장주식 : 취득원가. 다만,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가격으로 평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</p> <p>③-① 장외파생상품 :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정보 중 낮은 가격. 다만,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. (집합투자기구 설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)</p> <p>[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]</p> <p><업데이트></p>
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생략> • (주1) 기타비용은 증권의 <u>예탁</u> 및 <u>결제비용</u> (이하 생략) • <신설> 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총보수</u> · <u>비용 업데이트</u>(사유: 기타비용 업데이트) • <u>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 • (주1) 기타비용은 증권의 <u>전자등록</u> 및 <u>결제비용</u> (이하 생략) • <u>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업데이트</u>
<p>제3부</p> <p>1. 재무정보</p> 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</p> <p><u>업데이트</u></p>
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<생략>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<생략>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<u>업데이트</u>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<u>업데이트</u></p>
<p>제5부. 수익자총회, 임의해지,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관리보고서</p> <p><u>한국예탁결제원</u></p> <p>4. 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 <p><증권거래> : <생략></p> <p><채무증권거래> : <신설></p>	<p>제5부. 수익자총회, 임의해지,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관리보고서</p> 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 <p>4. 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 <p><지분증권거래> : <좌동></p> <p><채무증권거래> : 1)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</p> <p>- <u>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(중개수수료) 대비 수익</u></p> <p>- <u>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</u></p>

<p><장내파생상품거래> :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. 다만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,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<u>자산 운용본부장</u>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</p>	<p>-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재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</p> <p>2) 선정방법</p> <p>-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분기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</p> <p>3) 평가항목</p> <p>- 호가경쟁력, 신속성 및 정확성, 호가 투명성, 가격 대응 신의성실성, 세미나 주선, 시장정보 및 뉴스, 호가 대응력, 채권종류별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</p> <p><장내파생상품거래> : <u>지분증권 및 채무증권</u>거래의 경우와 같음. 다만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,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<u>운용총괄책임자 및 채권운용본부장</u>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</p>
<p>제5부. 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금액 : 108억원</p>	<p>제5부. 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금액 : 62억원</p>